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건축법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,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, 정비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가.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적용기준 신설(안 제21조의4)

나. 현장조사・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확대(안 제22조제1항)

다. 현장조사・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변경(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3)

라. 주택의 유지・관리 지원(안 제25조의3)

마.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삭제(안 제3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2017. 3. 9. ~ 3. 30〕
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「건축법」과 「건축법시행령」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,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안 제21조의4에서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적용기준을 신설하였고
-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에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중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하였으며
- 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3에서는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허가 시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사용승인 시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비율을 변경하여 사용승인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, 현장조사·검사 대상 건축물 규모 세분화 및 수수료 산출산식을 변경하였으며
- 안 제25조의3에서는 20년이상 경과한 등급이하 단독주택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융자 및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
- 안 제32조는 상위법에서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「건축법」과 「건축법시행령」 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